



서대문구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「구청장에게 바란다」 민원회신

2016.06.20. 우리구 홈페이지 『구청장에게 바란다』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.

- 다 음 -

1. 민원인 : *****

2. 민원요지

- 조합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이후 토지등소유자 직권해제 동의서 접수 및 절차 진행 가능 여부 (붙임문서 참조)

3. 회신 내용

가.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, 문의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.

나. 정비구역 직권해지에 대한 사항은 연희제1구역은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(이하 ‘서울시조례’) 제4조의 3(정비구역 직권해제 등)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 조합이 최초 사업시행인가 후 4년이 되는 날까지 **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**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조합의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선행될 경우 구청장이 직권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다는 의견과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바, 현재 서울시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였으며, 질의 회신 결과에 따라 행정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점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.

다. 무더위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,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재정비과(변재원, ☎ 02)330-1556)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붙 임 : 민원접수내용(구청장에게 바란다) 1부. 끝.

주무관

변재원

재개발팀장

이주원

도시재정비과장

송광덕

환경도시국장

06/22
황도현

협조자

주무관

김상현

민원조사팀장

조계원

시행 도시재정비과-6403 () 접수 ()

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/ <http://www.sdm.go.kr>

전화 02-330-1556 /전송 02-330-1597 / brain99@sdm.go.kr / 부분공개